

제 | 6 | 주 | 제

유기가공 생산자협회의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

강석찬 | | 한국유기가공생산자협회



유기농 생산자협회의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

강석찬*

국내 친환경농업의 현재와 유기농식품 인증제의 개선과제

I. 서론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추진코자 하는 ‘유기농식품 인증제도’는 국내 유기농식품제도 관리제도 확립,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농산업의 연계강화, 유기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의 정책방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불충분한 법률적 근거로 임의 표시 중심이던 유기농식품 부문에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새롭게 정비코자 한 점 그리고 규제중심의 식품산업을 육성·방향을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 눈에 띈다.

그렇지만 유기농식품 인증제도가 당초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많은 논의를 남겨놓고 있다. 우선 유기농식품 인증제 도입이 국내 유기농업의 생산에서 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체계적인 연계 속에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 유기농식품 인증제가 원료농산물 단계의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과 별도의 법률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일적 관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더욱이 유기농식품 인증제에서 원료농산물로 인증하고 있는 국내 유기농산물은 전체 생산농가 대비 0.56%(2006년 기준)에 그칠 뿐이다. 이 같은 체계는 현 유기농식품 인증제가 국내 농업과 유리된 채 단지 글로벌스탠더드,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등 자칫 명분위주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의 구체적 반영이 없는 글로벌스탠더드는 국내 유기농업 육성이 아니라 자칫 수입농산물의 국내 침투를 원활하게 하는 수단으로 자리할 수 있다. 또한 유기농식품산업 인프라

* 한국유기농생산자협회 회장

라 구축 등이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식품산업진흥법은 유기식품 부분의 인증제만 언급할 뿐이다.

따라서 이 글은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그리고 관련 가공식품산업의 현재적 요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기초해 현재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어떻게 자리하는 것이 올바른 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국내 친환경농업·유기농업 종사자의 이해에서 나아가 친환경가공·유기가공생산자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현황과 발전과제

1.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의 현황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은 70년대 중반 민간차원에서 시작되어, 90년대 중반 이후 정책적 관계 속에 성장해왔다. 주요 전환점은 97년 환경농업육성법 제정·공포, 00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의 명칭 개정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도입, 06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일부 개정을 들 수 있다. 2차에 걸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은 오는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까지 확대해 나갈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과 정책부분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국내 친환경농업은 <표 1>에서 보는 07년 기준 농가수 대비 9%, 생산면적 대비 6.1%, 인증량 대비 5.1%까지 성장했다. 절대적 규모에서는 아직 크게 미흡하지만,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도입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가수(호)	968	1,306	2,448	4,678	11,892	23,301	28,951	53,478	79,635	114,402
비중(%)	(0.006)	(0.10)	(0.18)	(0.34)	(0.93)	(1.84)	(2.33)	(4.31)	(6.3)	(9)
면적(ha)	758	876	2,039	4,554	11,239	22,238	28,216	49,807	74,995	108,502
비중(%)	(0.004)	(0.04)	(0.11)	(0.24)	(0.61)	(1.20)	(1.54)	(2.73)	(4.1)	(6.1)
인증량(톤)	24,265	26,643	35,406	87,278	200,374	365,203	460,735	797,747	1,128,093	937,321
비중(%)	(.01)	(0.15)	(0.19)	(0.45)	(1.17)	(2.21)	(2.48)	(4.38)	(6.2)	(5.1)

- 주: 1. 괄호안의 수치는 당해연도 전국 총 농가수, 경지면적, 생산량 대비 비중임
 2. 2007년의 경우 전국 총 농가수, 면적, 생산량에 대한 자료가 공식 집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편의 상 2006년의 해당자료를 대체하여 이용함.

3. 친환경농산물 생산 통계는 99년부터 작성하고 있는데 1998년도는 친환경산물 표시신고 농가 자료임

자료: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7).

2.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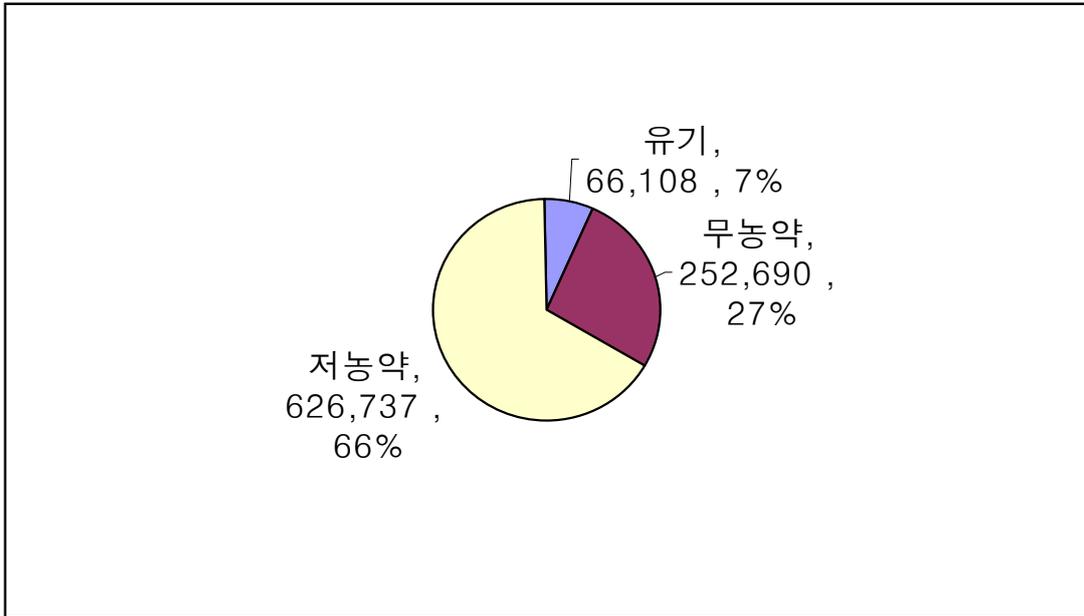
그러나 이 같은 친환경농업 성장에서 주의할 점은 전체 규모에서 아직까지 저농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유기농산물 생산량의 10배에 이르며, 무농약과 저농약을 합한 비중이 전체의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육성과 민간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친환경 농업은 무농약과 저농약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국내 친환경농업의 현재적 수준은 많은 논란 속에서도 국내 농업의 현실적 조건의 반영 탓으로 보인다.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출발 당시 관행농업 범주의 일반 친환경농산물과 저농약 즉, 관행농업의 개념을 포함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최소 저농약 수준을 포함해 간 것은 당시 국내 농업현황에 기인한 것이며, 친환경농업 발전의 단계적 과정에 따른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06년 법제정에서 일반 친환경농산물이 제외되고, 오는 2010년에 저농약 인증 등이 친환경농산물 범주에서 빠지게 된 것은 그간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그로 인한 생산자·소비자의 이해 증진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표 2>친환경농산물의 유형별 생산현황 변화 추이>

구 분	1998	2000	2002	2004	2007
전 농가수(호)	968	2,448(0.18)	11,892(0.93)	28,951(2.33)	114,402(9)
면 적(ha)	758	2,039(0.11)	11,240(0.61)	28,216(1.54)	108,502(6.1)
체 생산량(톤)	24,265	35,406(0.19)	200,374(1.17)	460,735(2.53)	937,321(5.2)
유 농가수(호)	270	353(0.03)	1,505(0.12)	3,283(0.27)	7,250(0.58)
면 적(ha)	-	296(0.02)	1,602(0.09)	4,622(0.25)	9,169(0.5)
기 생산량(톤)	5,844	6,538(0.04)	21,114(0.12)	36,746(0.20)	66,108(0.4)
무 농가수(호)	377	1,060(0.08)	4,084(0.32)	9,776(0.79)	29,662(2.3)
면 적(ha)	-	876(0.05)	3,727(0.20)	8,440(0.46)	25,410(1.4)
약 생산량(톤)	13,872	15,694(0.08)	76,828(0.45)	167,033(0.92)	252,690(1.4)
저 농가수(호)	318	1,035(0.07)	6,303(0.49)	15,892(1.28)	77,552(6.2)
면 적(ha)	758	867(0.04)	5,911(0.32)	15,154(0.83)	73,923(4.1)
약 생산량(톤)	4,549	13,174(0.07)	102,432(0.60)	256,956(1.41)	626,73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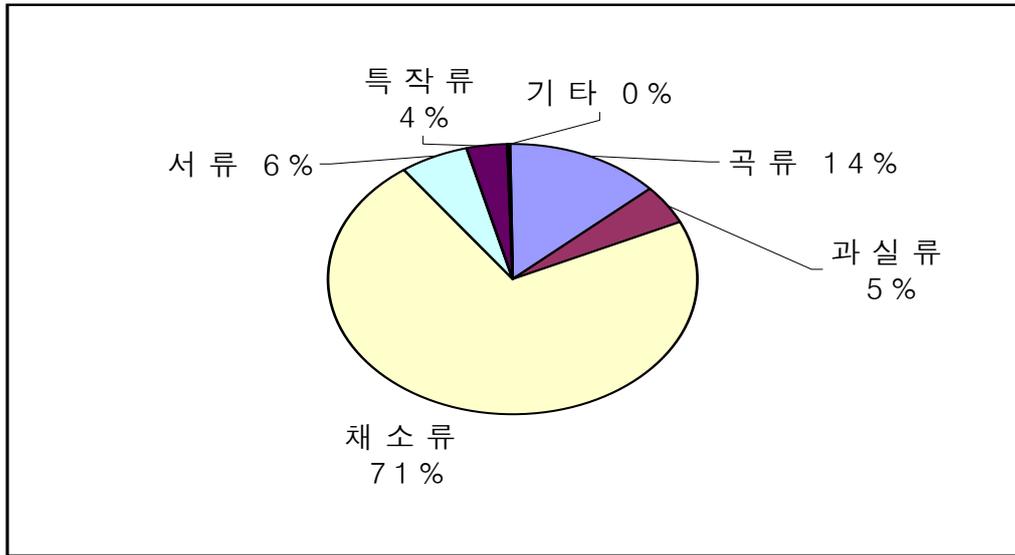
자료 : 2007년 농림업 주요통계(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7)

<그림 1> 2007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생산량과 비중 (단위 : 톤, %)



동시에 유기농 인증의 상대적 저조는 국내 농업의 자연·환경적 특성도 일정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는 또한 하절기 강수 등으로 지력의 수탈이 심하고, 더구나 오랜 기간 다수확 품종 중심의 화학농법을 지속해 온 관계로 유기농업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마철 등의 하절기 고온다습한 기후는 과수 분야 유기농업 진전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기농산물 인증부문별 비중을 보면 채소부분이 71%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국내 토성과 기후의 영향으로 보인다. 과실부분의 유기농업 인증은 전체에 5%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과수 부분의 유기농업의 어려움은 <표 3>에서 제시된 주요 품목의 유기인증 농가수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07년 말 현재 사과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수는 전국에 걸쳐 10농가에 그치는 반면 저농약 농가수는 6,074농가로 600배 수준이다. 과수 중에서는 포도와 감귤의 유기인증이 비교적 높는데 이는 하우스 시설 등 비가림 재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비가림 시설로 하절기 강우 등의 피해를 덜 보고, 그 만큼 병충해의 접근을 쉽게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 2007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부문별 생산량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7)

<표 3> 2007년 주요 과수품목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분포

품목	유기	무농약	저농약
사과	10	44	6,074
배	30	61	5,312
포도	102	344	4,222
복숭아	15	25	1,595
감귤	102	243	145
감	55	111	2,705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7)

한편 채소류 중심의 국내 유기농업 생산은 품질표시 또는 고시 차원으로 운영되어오던 유기가공식품 현황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표 4>는 2005년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을 받은 국내산 유기가공식품의 내역인데, 전체 63품목 중 채소부문에 기인하는 김치류가 30개로 가장 큰 범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외 부분의 유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단일 품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007년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는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수가 2005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50개 업체, 200개에 달하는데 품목종류별 구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친환경·가공식품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살림·생협 그 외 친환경 식품매장에서의 다양한 가공식품들은 저농약에서 유기농 부문까지 다양한 범위 농산물을 원료로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가피한 부

분을 제외하고는 대개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하는 한살림·생협 등의 가공식품 원료의 이 같은 현실은 저농약에서 유기농업까지 아울러 전개되는 국내 친환경농업의 현실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매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친환경농산물에 기반한 가공식품 육성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는 측면도 있다.

<표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국내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식품 내역 (2005년 6월)

구분	품목	품목수
김치류	포기김치, 백김치, 나박김치, 깍두기, 쪽파김치, 오이소박이, 깻잎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동치미김치, 보쌈김치, 고추씨김치, 더덕김치, 더욱무물김치, 맛김치, 무청김치, 배추짬지, 부추김치, 석박지, 여름석박지, 양배추김치, 양배추보쌈말이김치, 어린이용백김치, 어린이용깍두기, 돌나물물김치, 봄동김치, 총각무동치미, 배치김치양념속, 절임배추	30
절임류	더덕구추장장아치, 고추피클, 깎마늘피클, 양배추깻잎피클, 총각무피클, 풋마늘피클	6
장류	간장,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강된장, 쌈장, 볶음고추장, 집간장	8
식용기름류	참기름, 들기름	2
다류	녹차, 말차	2
당류	엿물	1
음료류	포도즙, 양과주스, 유기호박죽	3
가공곡류	누룽지	1
분말류	고춧가루, 청국장가루, 케일, 호박, 신선초,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부추(채소분말의 경우는 동결건조 후 분쇄)	10
	합 계	63

2. 국내 친환경·유기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미약

국내 친환경농업 발전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 10년의 경과 속에 여러 개선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생산부문과 직접 관련한 친환경농업 생산자재, 축산분뇨 활용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여전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최근 식품관련 정책의 변화와 함께 친환경·유기농업과 국내 식품산업의 미약한 연계의 극복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생산부문과 관련해서는 생산농가의 접근 용이성, 친환경농업의 정의, 글로벌스탠더드의 적용 등이 관계하는 토론 회 주제를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친환경·유기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미약의 극복은 친환경·유기농산물의 판로확보 외 다양한 범위의 요구를 담고 있다. 특히 최근은 지역농업 클러스

터 등의 범주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경제와 지역농업 발전 측면에서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식품산업까지의 연계를 갖지 못한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은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이 심각한 재고문제에 봉착하는 중에서도 유기농산물 수입의 급증이라는 기현상을 불러왔다. 그리고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부족은 안전한 먹을거리와 참살이 풍조를 희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막연한 유기식품 소비증가를 불러오는데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기대·참살이의 지향이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수입 유기식품 시장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같은 경향 속의 유기농식품 수입의 급속한 증가는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06년 유기농식품 수입량은 00년 570톤의 20배에 이르는 112만 8천 톤에 이르렀다.

<표 5>유기농식품 수입 현황

(단위 :톤,천달러)

년도	00	01	02	03	04	05	06
중량	570	722	1,077	1,655	4,439	7,095	11,228
금액	780	1,699	3,019	4,565	12,608	31,980	26,769

* 수입 유기농식품은 외국에서 가공원료로 수입된 유기농산물과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을 합한 것임

국내 친환경·유기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미약의 극복은 막연한 유기식품 선호풍조가 아닌 국내 농업과의 구체적 연계 요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일방적 유기식품 추구가 아니라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토대에 기초한 식품산업의 육성을 말한다. 그리고 이 같은 요구는 오늘날 지역 범주에서 식품산업 클러스트 육성, 향토산업 육성 등에서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친환경·유기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부족은 과거 먹을거리 시책의 관장부처가 과거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구분되었던 영향이 크다. 과거 농림부는 농산물의 생산부문에 관계할 뿐이었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도축·가공, 유통분야까지를 관계하였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 등 식품산업의 범주는 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소관이었다. 식품산업 부문이 국내 농업과의 연계와 육성보다는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인 것이 때문이었다.

지역현장의 구체적 요구가 결여된 관리·감독 중심의 식품산업 관리는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약화와, 일반 기업 중심으로의 식품산업의 편재

를 낳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내 식품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체계 속에 전통식품 등의 육성을 농림부에서 주관 추진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 부문 역시 안전성 등과 관련한 총괄적 범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나친 관리·감독으로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유기가공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공정 등으로 상품화 진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Ⅲ.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과 실천과제

1.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의 의미와 친환경·유기농업의 관계

관리·감독이 아닌 산업육성 차원에서 식품으로의 접근은 친환경·유기농업은 물론 농업전반의 요구이다. 국내농업과 식품산업 영역의 제조·가공 그리고 외식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의 연계확대 요구가 이에 함께하고 있다. 과거의 소비자의 권리와 이해의 일방적 반영으로 추진되던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원의 식품정책이 국내 농업·농촌·농민의 구체적 반영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한다.

식품산업에 대한 이 같은 새로운 전망은 농림수산식품부로의 식품산업 총괄업무의 이전과 그 가시적 행보의 하나인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등으로 보다 구체화 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제1조 목적에서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수반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구축,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참에 현재의 논의들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범위에서 국내 농업 그리고 친환경·유기농업과 연계를 맺어 나가기를 다음 지점의 개선과제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법이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강화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농업관점에 기초한 식품산업발전 방안 모색의 부족 등으로 현 수준에서는 과거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대체하는 정도를 크게 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등의 활동 여하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논의 과정에서 법·제도의 정비와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진흥법 내용 중 현 시점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친환경·유기농업과 큰 연관을 갖는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도입이다. 이는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없이 임의 표시제로 운영되어 오던 유기식품의 올바른 자리

매김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식생활 안전성 제고에 나름의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역시 글로벌스탠더드 등의 추상을 쫓아가기보다 국내 친환경농업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담은 단계적 접근 등의 요구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초의 친환경·유기농업에서 식품산업의 기대는 유기식품인증제의 제한된 범위이기 보다는 친환경가공식품 산업 전반의 육성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국내 친환경식품은 생산기반이 미약하거나 대형 식품기업이 주도하면서 원료부분의 많은 부분을 수입유기농산물이 장악하고 있다. 또는 아예 완제품 중심의 수입 친환경식품이 시장을 크게 잠식한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친환경식품 시장 환경은 현재는 물론 중·장기적 어려움 속에서 이제 막 성장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국내 친환경농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친환경농산물과 식품산업의 구체적 연계 요구는 바로 이 같은 현실에 기반 한 것이었다. 식품산업과 국내 친환경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오늘날 당면한 과잉생산물과 등외품 처리 등의 부담이 상당정도 해소해 나아가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점에서 친환경농업과 식품진영은 식품산업진흥법의 유기가공식품인증제에 여러 문제제기를 해 왔다. 그 내용은 후술하지만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도입 자체의 비판이기 보다는 국내 친환경농업 전반의 육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단적으로 현재의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만으로는 국내 친환경·유기농업과 식품산업의 교량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가 현재 저농약에서 유기농업까지를 포괄하는 국내 친환경식품산업을 올바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던지 또는 별도 체계에서 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유기식품인증의 단계적 접근과 친환경농업 육성과의 연계 강화의 필요성

국내 친환경농업에서 유기농업의 비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농업 생산량의 0.4%, 저농약까지를 포괄하는 친환경농업 범위로 제한해 보더라도 7%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 현실 속에서의 유기식품인증제도는 국내 유기농업의 진흥보다 수입유기농산물 원료 또는 수입유기가공식품 위주로 편제된 유기식품가공산업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유기농산물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의 일방적 도입이 아니라 국내 친환경농업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

와 함께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유기식품인증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는 국내 친환경농업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의 다른 표현이다. 앞 장에서 살펴봤지만 오늘의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 후 10년을 경과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친환경·유기농업을 전체 국민의 이해속으로 옮겨왔다. 국내 친환경농업의 첫 출발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농업의 척박함으로 INM-IPM(양분,병해충종합관리)등의 일반 농업 개념까지를 포괄하면서 출발했다. 그리고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 유기 등의 인증제가 추진되었다. 친환경농업에서 일반농업 개념의 폐기는 06년 9월의 법 개정에서 비로소 실현되었다. 06년 친환경농업법 개정은 이와 함께 과거 농업생산자 만의 친환경농업을 유통과 유기농 자재 부문까지 확대하였으며, 인증제도를 정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저농약-무농약-유기농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오는 2010년에는 저농약이 인증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친환경·유기농업의 이 같은 성장은 현재의 유기식품만을 대상으로 출발하는 현 식품인증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의 생산 측면을 볼 때 유기식품인증제는 국내 농업과 큰 괴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살림·생협 등의 주요 친환경 식품의 절대적 범위가 저농약에서 유기농산물까지의 포괄적 범위에서 원료농산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현재 국내 친환경·가공식품의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오늘날 친환경농업 농가의 다수를 이루는 저농약·무농약 농가를 정책적으로 육성해온 이상 식품산업과 이를 연계하는 방안도 마땅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의 발효를 앞 둔 마당에 저농약·무농약에 대한 대비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이에 당장은 시행령·시행규칙에 그 경과조치를 두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법률 정비 등까지를 염두에 둔 접근이 요구된다. 요점은 역시 소비자들이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와 구매 욕구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식품인증제도 자체로의 보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다른 품질표시 제도의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기식품인증제도에서 저농약·무농약 등의 배제는 현재의 유기식품인증제가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의 기초가 된 친환경농업육성법과는 별도의 체계로 이루어진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는 원인도 있다. 별도의 법률에 의한 인증제도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체계적 관리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친환경·유기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과 별개 체계 속의 운영은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현실을 무시하고, 유기식품인증제만의 독자적 운영이 제안되고 있는 자체가 이미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근거한 오늘의 친환경·유기농업과 괴리된 유기식품인증제는 지난 시기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원에서 제기되던 유기식품의 관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 제도가 국내 유기농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기 속에서도, 본 제도에 관계하는 정책 입안자·연구자 등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유기식품인증제가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의 유기식품인증제는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판단기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식품산업진흥법 목적이 분명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이 같은 주장은 그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 결국 현재의 유기식품인증제가 국내 유기·친환경농업 육성에 올바르게 관계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률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로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법률과의 통일적 관리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 단계의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의 단계적 접근은 친환경·유기농업 여건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제기된다. 먼저 설탕 등 국내 생산이 없는 유기식품 부문의 준비는 물론이고, 유기가공식품이 일반 식품에 준하는 유형과 맛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전기한, 식감, 맛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친화적 보존제, 유화제 등에 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유기식품인증기준 등)에 따른 유기적 취급 허용물질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당 물질들은 해외 사례의 원용으로 한국형 식생활과 가공식품의 구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친환경 식품산업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속에서 친환경 식품 첨가제, 보조제 등에 대한 준비가 크게 부족하다. 더욱이 친환경·유기식품 관여업체 자체가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여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증제 도입 이전에 유기식품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현 유기식품인증제도 운영 계획의 보완과제

현재의 유기식품인증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8일 이후 시행에 들어가기로 되어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유기식품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나름의 보완이 요구된다.

먼저 유기식품인증을 포함한 우수식품 인증을 위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입법 예고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등)는 우수식품기관 지정 요건에 검사장과 검사 장비를 요구하고 있다. 검사장과 검사장비 요구는 인증기관에 상당한 비용 부담, 전문 인력의 보장, 공인된 분석법의 요구 등을 강제하는 것으로 민간단체의 우수식품인증기관 참여의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 공공기관 또는 몇몇 대기업 중심의 인증기관 운영을 의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따라서 검사장과 검사장비의 요구는 특정 이를 갖춘 사업장을 지정하는 것으로 대체해, 그 접근성을 갖추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분석 등이 필요하다면 시설이 준비된 사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같은 보완은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등도 식품산업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며, 친환경·유기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장점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수식품인증기관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할 부분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우수식품인증기관 지원 등)에서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사업·업무상의 과오가 충분히 모니터링 되고, 그에 따른 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의 지적의 연장에서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정책 당국의 이해에 충실한 특정 몇몇 기관으로 제한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음으로 보완이 시급하다. 더불어 우수식품기관이 우수식품을 인증한 후의 사후관리 체계도 부족하다. 관련 공청회에서 인증농가와 생산자를 민법으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먹을거리를 다루는 차원에서는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식품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수입유기식품의 인증 등)는 수입업자 등에게까지 동등성 인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철저히 수출국 등의 국가 단위로 제한토록 해야 한다.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입에서 제시되는 동등성 원칙은 마땅히 국가 간 상호주의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국가가 이를 요청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제품도 함께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 제29조와 같이 수입업자에게 동등성 심사 신청을 허용

할 경우, 무분별한 신청의 남발은 업무·효율상의 문제는 물론 특정 수입업자의 수입식품의 국가 인증으로 이어져 국내 친환경식품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식품위생법 고시를 2009년 6월 28일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은 표시를 ‘인증’으로 격상시켜내 국내 친환경농업 육성과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 취지와 모순되어 시정이 요구된다.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유기식품인증제’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고시가 일정기간 존속된다는 것은 임의 표시 수준의 유기식품 유통을 방치하는 결과로 ‘유기식품인증제’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타 법률에 의한 고시의 유효성을 다른 법률의 시행규칙으로 규율하는 법체계상의 모순뿐 만 아니라, 신설 유기가공식품 인증 제도의 정착과 소비자의 통일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식품산업진흥법이 단일한 유기가공식품인증제를 도입한 이상, 표시제 역시 동시에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적은 유기식품인증제가 궁극적으로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의 연계 속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앞의 지적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우수식품인증’(법률 제 24조), ‘우수식품인증기관’(령 제30조),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규칙 제35조) 등 여러 조항에서 ‘우수 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우수식품’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법률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개념이며, 따라서 이를 구체적 법률행위와 연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식품산업진흥법내에서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인증 및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세 분류의 식품만이 우수식품에 해당된다는 오해의 소지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리도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이는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의 정의, 위해식품규정,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등’이라는 문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의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문언 등의 기존 법체계와도 맞지 않다. 그러므로 ‘우수식품’이라는 용어는 ‘산업표준인증 식품 등’과 같이 적절하게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이미 국내 시장에 상당한 양의 유기식품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증이 결여된 임의 표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불량 유기식품 유통에 대한 우려까지 상존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결여로 국내 친환경가공 식품은

그나마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품질인증을 거치지만, 수입유기식품은 검증절차 없는 수입국의 인증만으로 유기식품 표기를 임의로 할 수 있어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의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이 같은 취지에서 국내의 유기식품인증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 도입을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이왕의 도입이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의 구체적 현실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음도 함께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제기되는 부분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통해 성장해온 친환경·유기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매개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의 유기농업과 유기식품산업의 육성이 아니라 국내 친환경·유기농업과 구체적 연계를 통한 친환경·유기식품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그 전제 위에서 유기식품인증제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식품인증을 지향하면서도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을 염두에 둔 단계적·점진적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법률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면 시행령·시행규칙의 경과조치를 마련해 저농약과 무농약을 활용한 식품산업 표기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는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현실을 반영한 저농약·무농약 원료의 식품에 대한 인증 또는 표기의 제도화를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농업현실 뿐만 아니라 유기식품을 위한 첨가제·보조제의 요구 등에서도 이 같은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코덱스 기준이나 IFORM의 추종이 아닌 국내 식품산업의 구체성의 전제에서 유기식품 허용물질 그리고 식품 보조제·첨가제 등의 논의가 마련할 필요도 제기된다.

한편 현재의 유기식품인증제 준비정도는 구체적 운영 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입법 예고를 통해 본 우수식품인증기관 관련부분은 몇몇 국가공공 기관 또는 대기업 대상으로 이를 제한 운영하고자 하는 의증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 국내 친환경·유기농업과의 구체적 연관 속에 유기식품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수식품산업인증기관에 현재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까지를 포함해 보다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고 이 같은 요구는 국내 친환경·유기농업과 식품산업의 통합적 운영 면에서도 적극 검토할 부분으로 보인다. 그 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자체 감독과 이들 기관이 인증한 식품사업자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논의도 보다 진전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의 제기는 무엇보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가 국내 농업과의 구체적 연관 속에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친환경·유기식품 가공생산자들이 나름의 발전을 이루었으면 한다. 친환경·유기농업과 친환경·식품산업의 연계 발전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이 글의 문제제기를 받아 향후 보다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